

## 입학사정관제운영에관한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정의)** ① ‘입학사정관제’라 함은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,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학업수행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, 창의성,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② ‘입학사정관’이라 함은 학생의 학업능력과 소질,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토록 임용된 자를 말하며,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교수사정관 :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입학전형에 관한 연구 및 평가업무 전담을 목적으로 신규 임용 또는 교원 중 임명된 자.
2. 전환사정관 :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입학전형에 관한 연구 및 평가업무 전담을 목적으로 직원 중 임명된 자.
3. 채용사정관 :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입학전형에 관한 연구 및 평가업무 전담을 목적으로 신규 임용된 자.
4. 위촉사정관 : 입학사정관전형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본교에서 위촉한 자.

③ ‘입학사정관 전형’이라 함은 제①항에 의한 전형 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4조(채용사정관 임용 등)** ① 입학사정관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학력, 경력, 및 기타 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하며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.

② 채용사정관은 입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.

③ 채용사정관의 임용기간, 급여, 근무조건, 재계약요건,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따른다.

④ 채용사정관의 직위는 수석입학사정관, 책임입학사정관, 입학사정관으로 임명한다.(개정 2012.04.20)

3-2-26~2 제3편 행 정

⑤ 채용사정관은 본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(별표 1)을 준수하여야 하며, 그 외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업무)** 입학사정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입학사정관제도 및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연구·개발
2. 입학사정관전형 운영
3.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 평가 및 선발
4. 입학사정관 전형 결과 분석
5. 고교-대학 연계 방안 연구 및 시행
6.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의 사후관리
7. 입학사정관 전형 홍보, 설명회 및 상담
8. 입학사정관제 관련 교육·훈련
9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**제6조(입학사정관 교육 및 훈련)** 입학사정관은 자체 교육·훈련 및 외부기관의 양성·훈련과정, 연수, 워크숍, 세미나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입학전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.

**제7조(입학사정관 전형의 절차 및 방법)** ① 입학사정관 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단계 전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입학사정관은 지원자의 학업 성적, 교내·외 활동 및 그 밖의 전형 자료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입학사정관 전형의 최종합격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**제8조(입학사정위원회)** ① 입학사정관 전형의 합격자 결정 등을 위하여 입학사정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입학사정관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입학처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입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공정성·신뢰성 확보)** ①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평가 시작 전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를 위하여 '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' (별표 1)을 읽은 후 서약서 (별표 2)를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직계가족, 친인척, 지인 등 일반적 사회통념상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가 가천대학교에 지원한 경우 또는 지원이 예상되는 경우 '회피·제척 사유서' (별표 3)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②항에 의거 신고한 사람은 평가업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한다.

④ 이 외의 회피·제척 제도에 대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 규정에 따른다.

**제10조(이의 신청)** ① 수험생 및 학부모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입학사정관실은 현황을 파악하고,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‘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’에 안건을 상정하고 원인을 분석한다.

② ‘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’에서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, 입학처장은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하고 결과를 발표한다. 이 때 재평가의 결과는 기 발표한 해당전형의 타 수험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③ 재심위원회는 입학사정위원회가 겸한다.

**제11조(비밀유지의무)**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자는 법령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입학사정관제 운영위원회)** 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운영의 발전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13조(준용)**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있어 이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제규정에 따른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2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(개정 2015.05.26.)

**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**  
**Code of Ethics for GACHON Admission Officer**

우리는 가천대학교의 입학사정관으로서 ‘박애’, ‘봉사’, ‘애국’을 지향하는 인재 선발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. 이에 공정하고 책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선언한다.

**1. 학생선발 전문가로서의 윤리**

- 가.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이념 및 비전을 충실히 이해하고 가천인으로서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.
- 나. 입학사정관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대학의 명예를 유지·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에 근거해 판단하고 행동한다.
- 다. 입학사정관은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, 인종, 성별, 연령, 국적, 지역, 경제적 지위, 신체적 장애, 출신학교 등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아니하며, 또한 이들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.
- 라. 입학사정관은 학생선발과 심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회유에 굴하지 않고 원칙과 규정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
- 마. 입학사정관은 자신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입학사정관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.
- 바. 입학사정관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.

**2. 학교 및 사회에 대한 윤리**

- 가. 입학사정관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목적을 인지하고 양심에 근거해 전문적인 판단을 한다.
- 나. 입학사정관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- 다. 입학사정관은 공·사를 명확히 구분하며,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, 알선 및 청탁, 특혜부여 등 비윤리적·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라. 입학사정관은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에 최선을 다하고, 대학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대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.
- 마. 입학사정관은 선발된 학생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.

(별표 2)

## 서약서

소속 :

성명 :

상기 본인은 20\_\_학년도 \_\_\_\_\_전형 평가위원으로서 ‘가천대학교 입학사정관 윤리강령’을 준수하고,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며, 업무 중 부정에 개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서약자 : (인)

가천대학교 총장 귀하

